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데 현재 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.

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

를 하는 경우 '정비사업 정보몽땅'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명한 조합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